

## 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 및 화력 발전에 대해 부과</li> <li>○ &lt;신 설&gt;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○ <u>매립폐기물에 대한 과세 신설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과세대상) 폐기물매립시설(대상 한정)에 매립하는 폐기물</li> <li>- (납세의무자)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</li> <li>- (납세지)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</li> <li>- (세율)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</li> <li>- (부과·징수) 부과·징수(방법, 시기, 특별징수의무자 지정 등)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</li> <li>- (납세의무 성립일) 폐기물을 매립하는 때 * 지방세기본법§34</li> </ul> </li> </ul>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교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시설 소재지 시·군·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65%를 해당 시·군·구에 교부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교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 및 폐기물 매립시설 소재지 시·군·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65%를 해당 시·군·구에 교부 * 지방재정법§29·29의2</li> </ul>

## □ 개정 내용

-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과세